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연구

배호영 연구위원 (bhy@kbiz.or.kr)

2020. 6

KBIZ중소기업연구소

※ 본 연구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 차



| | |
|-----------------------------------|----|
| I. 서론 | 4 |
| 1. 연구의 필요성 | 4 |
| II. 리쇼어링 관련 선행연구 및 입법동향 | 6 |
| 1. 리쇼어링 관련 선행연구 | 6 |
| 2. 리쇼어링 관련 입법동향 | 8 |
| 3. 리쇼어링 관련 쟁점도출 | 10 |
| III. 해외 리쇼어링 정책 분석 | 11 |
| 1. 미국 리쇼어링 정책 분석 | 11 |
| 2. 일본 리쇼어링 정책 분석 | 14 |
| IV. 국내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제시 | 17 |
| 1. 규제완화 중심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 17 |
| 2. 중소기업 중심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 21 |
| 3. 리쇼어링 특구지정 방안 | 23 |
| 4. 리쇼어링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 26 |
| V. 결론 | 27 |
| 1. 연구결과 요약 | 27 |
| 참고문헌 | 29 |
| 별첨 | 30 |
| 1.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현황 | 30 |
| 2.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 31 |
| 3.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32 |



요 약



2020년의 최고 화두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목숨을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위축시키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뿌리째 뒤바꾸어 놓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의 회복 및 도약을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고, 리쇼어링(Reshoring) 관련 선행연구 분석과 입법동향 분석을 통해 4가지 쟁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의 리쇼어링 정책을 비교연구해 보았다. 그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의 4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리쇼어링의 정책방향이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국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 환경, 입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제안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리쇼어링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입지·설비 보조금 한도 상향, 중소기업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수도권 입주시 입지·설비 보조금 신설 등 중소기업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셋째, 리쇼어링 정책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히 관리하고 리쇼어링 기업의 GVC(Global Value Chain)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단지 활용하는 방식보다 리쇼어링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리쇼어링 특구의 조성입지로는 중국·동남아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새만금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넷째, 정부와 대기업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가칭)리쇼어링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다만, 리쇼어링 정책의 성과 확대와 국내 기업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수출비중, 인력고용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약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20년의 최고 화두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목숨을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위축시키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뿌리째 뒤바꾸어 놓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 위해 국가차원에서 막대한 행정·재정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2015년 메르스(MERS)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액은 10조 8천억원에 달했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액은 가늠하기 어려운 천문학적 수준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¹⁾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 판매, 고용 등 경영 전반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²⁾의 생존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비, 치료비, 방역비, 긴급재난지원금 등 개인 차원의 지원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특례보증, 고용유지지원금 등 기업 차원의 지원금들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며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0년 6월 우리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 ‘산업·경제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 등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는데, 3대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가 바로 ‘유턴·첨단산업 유치 등 GVC³⁾ 허브화’이다.⁴⁾

1) 질병관리본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비용 추계 및 신종 감염병 대응 사회투자의 영향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 2020; 신재우, “2015년 메르스 피해액 10조8천억...코로나19는 가늠 못할 수준”, 연합뉴스 기사, 2020. 6. 7.

2) 본 연구에서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3) GVC란 Global Value Chain의 약자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을 의미한다.

4) 관계부처합동,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책보고서, 2020. 6.

물론 우리 정부는 2013. 8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리쇼어링법’이라 한다)을 제정한 이후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입지지원,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인력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기준 국내복귀기업은 71개 기업으로 리쇼어링이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2020년 6월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국내 높은 생산비용(63.2%),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25.0%), 현지 원청 기업과의 관계(23.0%), 노동·환경 등의 국내 각종 규제(9.9%), 유턴 인센티브 부족(2.9%) 등이 제시되었다.

종합해보면, 우리 정부 정책에서 리쇼어링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부족한 인센티브로 인해 리쇼어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의 회복 및 도약을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고, 리쇼어링 관련 국내 선행연구 분석, 국내 입법 동향 분석, 해외 정책 분석 등을 통해 국내 리쇼어링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리쇼어링 관련 선행연구 및 입법동향

1. 리쇼어링 관련 선행연구

리쇼어링(Reshoring)이란 해외 자국기업들의 본국회귀를 의미하며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개념이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이 인건비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해외로 생산시설로 이전하는 것을 오프쇼어링이라고 한다면, 해외로 이전했던 국내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회귀하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오프쇼어링은 기업의 생산활동 일부를 외국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지칭하며 수직적 해외직접투자(FDI)와 국외 아웃소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에 오프쇼어링의 역현상(Reversal of Offshoring)인 리쇼어링은 수직적 해외직접투자의 국내복귀(U턴 현상)와 국외 아웃소싱의 국내생산 전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⁵⁾

리쇼어링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오프쇼어링 기업에 대한 성과와 관련된 연구⁶⁾는 존재하였으나,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성과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아직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 리쇼어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⁷⁾과 리쇼어링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장⁸⁾이 논쟁이 되고 있다.

생각건대, 리쇼어링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이 해외에 비하여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해외진출 국내기업들의 본국회귀가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분석 가능한 표본(데이터)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⁹⁾ 현재까지 진행된 리쇼어링과 관련 국내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
- 5) 이상욱·권철우·최창훈,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요인분석”, 사회과학연구, 제55권 제1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212쪽.
- 6) 이재윤 외, “한국기업의 오프쇼어링 성과분석 및 시사점 -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7-853, 산업연구원, 2017.
- 7) 이수영 외,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연구보고서, 18-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남수중·방만기, “리쇼어링의 주요 국가 사례와 결정요인 분석 - 4차 산업혁명이후 기술혁신의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19.
- 8) 이재윤 외, 위의 연구보고서, 2017; 이상욱·권철우·최창훈, 위의 연구보고서, 2016.
- 9)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5월 기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71개 기업(원래 80개 기업을 선정했으나 유턴 포기나 폐업으로 인하여 9개 기업은 취소됨)이며, 정부·지자체 예산 9,06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468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다(맹수석,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전략 정책토론회 자료집(어기구 의원실 주관), 2020. 5, 5-6쪽).

[표 1] 리쇼어링 관련 국내 연구결과 요약

① 이수영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¹⁰⁾

- 리쇼어링 정책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로 수정 필요
- 첨단산업이나 패션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추진 필요
- 생산위치별 비용정보 제공 및 공급망 연결 지원
- 국내 투자지원 제도의 재정비 필요

② 이재윤 외 (산업연구원, 2017)¹¹⁾

- 국내 제조업은 오프쇼어링을 통해 생산성 증가효과를 창출
- 리쇼어링 정책 확대 시 오프쇼어링의 위축으로 이어져 대폭적인 고용 증가보다는 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만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을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병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③ 남수중 · 방만기 (비교경제연구, 2017)¹²⁾

- 4차 산업혁명이 리쇼어링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④ 정준호 (월간노동리뷰, 2016)¹³⁾

- 미국내 리쇼어링에 대한 평가가 낙관론과 회의론으로 구분
- 리쇼어링으로 인하여 미국 제조업의 생산규모와 노동생산성은 증가할 수 있지만 고용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음
- 미국 리쇼어링 기업의 경우 숙련인력 부족과 신규투자 부재로 리쇼어링의 효과를 제한시키고 있음

⑤ 이상욱 · 권철우 · 최창훈 (사회과학연구, 2016)¹⁴⁾

- 국내에서 오프쇼어링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리쇼어링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특히 비용측면의 리쇼어링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리쇼어링에 대한 정책 추진 시 R&D, 디자인, 기술, 경영본부 등 고부가가치 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유인체계가 필요

10) 이수영 외, 위의 연구보고서, 2018.

11) 이재윤 외, 위의 연구보고서, 2017.

12) 남수중 · 방만기, 위의 연구보고서, 2019.

13) 정준호, 위의 보고서, 2017.

14) 이상욱 · 권철우 · 최창훈, 위의 연구보고서, 2016.

2. 리쇼어링 관련 입법동향

리쇼어링 관련 법률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2013. 8월에 제정(법률 제12010호)되어 2013.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리쇼어링법의 체계는 [표 2]와 같다.

[표 2] 리쇼어링법 체계 요약

| 조항 | 내용 | 비고 |
|--------|-------------------|---|
| 제1조 | 목적 | |
| 제2조 | 정의 | 해외진출기업, 사업장, 국내복귀, 국내복귀기업 |
| 제3조 | 국가·지자체의 책무 | |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제5조 |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 |
| 제5조의2 | 시행계획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 수립 |
| 제6조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함 15명 이내 구성 |
| 제7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니며, 해외생산량 감축요건 25% 충족시(시행규칙) |
| 제8조 | 선정취소 | 폐업, 신증설 국내사업장 2년 이상 미운영시 |
| 제9조 | 실태조사 | |
| 제10조 | 업무위탁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 가능 |
| 제11조 | 조세감면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관세법 등에 의해 조세감면 가능 |
| 제12조 | 자금지원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가능, 토지·공장의 매입비용·임대비용·설비투자금액 등 지원가능 |
| 제13조 | 입지지원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산업단지를 우선공급 가능 |
| 제13조의2 |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가능 |
| 제13조의3 |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을 임대시 임대료 감면 가능 |
| 제13조의4 | 국유·공유재산의 매각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수도권 외의 지역 토지 : 시행령) |
| 제13조의5 | 국유·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 |
| 제14조 | 인력지원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지급가능 |
| 제15조 | 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 지원가능 |
| 제16조 |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 2개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가능 |
| 제17조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설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내 설치 |
| 제18조 | 별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 업무위탁을 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
| 제19조 | 별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20조 | 양벌규정 | |
| 제21조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리쇼어링법의 체계를 요약하면, 법률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에 대하여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대하여 제11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과 과태료에 대하여 제18조 내지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제11조), 자금지원(제12조), 입지지원(제13조),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5), 인력지원(제14조) 등 현행 법률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국내복귀기업 실적을 고려해 볼 때, 정부는 인센티브 확대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도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0년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도 리쇼어링법 개정 관련 입법발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6월 기준 입법 발의된 4개의 개정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해외생산량 감축요건을 25%에서 10%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리쇼어링 관련 입법발의 현황 (2020. 6. 10. 기준)

| 의안번호 (제안일자) | 제안자 | 법률 개정 주요 내용 |
|------------------------|-----------------|--|
| 2100084 (2020.6.3.) | 강기윤 의원 등 10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해외생산량 감축요건(25%)을 법률로 상향 · 수도권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생산량 감축요건 25% 규정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생산량 감축요건 10% 규정(완화) |
| 2100092 (2020.6.3.) | 구자근 의원 등 10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해외생산량 감축요건(25%)을 법률로 상향 · 수도권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생산량 감축요건 25% 규정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생산량 감축요건 10% 규정(완화) · 국내복귀의 범위에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고도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포함 |
| 2100162 (2020.6.4.) | 강기윤 의원 등 11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
| 2100230 (2020.6.5.) | 김도읍 의원 등 10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임의절차인 실태조사를 강행절차(매년 실시)로 변경 · 현행 임의규정인 조세감면을 강행규정(조세감면 해야한다)으로 변경 |

3. 리쇼어링 관련 쟁점도출

제1장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리쇼어링과 관련된 여러 연구자들의 선행연구와 국회의 입법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필자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쟁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① [쟁점1] 리쇼어링을 추진함에 있어 인센티브 확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규제완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지?

(도출근거) 현행 법률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국내복귀기업 실적을 고려해 볼 때, 정부는 인센티브 확대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도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쟁점2] 리쇼어링을 추진함에 있어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지, 아니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이 필요할지?

(도출근거) [부록1]의 현행 국내복귀기업 71개사(100%)의 현황을 분석해 볼 때, 중소기업이 62개사(87.3%), 중견기업이 8개사(11.3%), 대기업 1개사(1.4%)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전체 기업체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이 보다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쟁점3] 리쇼어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안은 무엇인지?

(도출근거) 공급망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정부에서 리쇼어링 관련 클러스터(Cluster)를 조성해 준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이탈된 GVC(Global Value Chain)의 수평적·수직적 재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차별화된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으로 리쇼어링 특구를 조성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④ [쟁점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쇼어링의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도출근거) 현 시대는 스마트공장, 스마트워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리쇼어링 역시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스마트화와 연계된 리쇼어링은 일자리 창출 효과 보다 국내 경제(산업) 활성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Ⅲ. 해외 리쇼어링 정책 분석

1. 미국 리쇼어링 정책 분석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개발도상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오프쇼어링의 효과가 감소하자, 리쇼어링을 통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미국은 세금감면, 에너지 비용감축, 셰일가스 개발 등에 대한 투자 등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¹⁵⁾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 이라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를 시작으로, 2010년 제조업 증강법(Manufacturing Enhancement Act of 2010)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리쇼어링을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필수 수입원자재의 관세는 줄이고,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완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였다.¹⁶⁾

또한 같은 시기 미국 의회는 오프쇼어링 제한법(Make it in America)을 통과시켜 미국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을 폐지하여 오프쇼어링을 장려할 수 있는 조세 법률상의 허점을 수정하였고,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 이라는 리쇼어링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자료 제공, 미국 내 리쇼어링 안내 전문 비영리기관을 설립하였다.

2012년 1월 오바마 행정부는 [표 4]와 같이 ‘미국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n America Built to Last)’ 라는 정책 하에 대대적인 제조업 강화 정책을 다시 한 번 발표했다. 자국복귀기업에 양질의 노동자를 훈련시켜 제공해주고, 천연가스 공급을 안정적으로 실시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미국 재무부와 공동작성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제조업 부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법인세 상한선을 35%에서 28%로 낮추고, 제조업체의 경우 25%까지 특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5) 이수영 외, 앞의 연구보고서, 2018.

16) 김상진, “리쇼어링 2.0 필요 :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제18-24호, 중소기업연구원, 2018. 9.

[표 4] 미국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n America Built to Last)¹⁷⁾

| 구분 | 지원내용 요약 |
|---|---|
| <p><제조업>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아웃소싱 제한, 인소싱 장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웃소싱에 대한 공제 제한 - 해외에서 발생한 이윤 및 일자리에 대해 세금 부과 - 국외 공장 생산 제품 미국 역수출에 관세 부과 - 미국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보상 제공 - 미국 내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
| <p><기술> 열심히 일하고 책임 있는 미국인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훈련 및 일자리 제공 위해 대학과 기업의 파트너십 구축 - 직무교육과 실업보험을 개혁하고 실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창설 - 모든 주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촉구 등 |
| <p><에너지> 미국의 에너지 자원 최대한 활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년간 천연가스 공급 개발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제공 - 에너지 업그레이드 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

2017년에 집권한 트럼프 행정부는 더 나아가 법인세율을 21%까지 낮추었으며, 해외공장 생산제품의 미국 역수출품에 25% 관세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 및 외국기업 유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총 3,327개의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회귀하였다.¹⁸⁾

예를 들어, 멕시코에 약 16억 달러를 투자하여 소형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려던 포드(Ford) 자동차는 해외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미국 미시건주 플랫록의 기존 공장을 확대하여, 3,500개의 기존 일자리 사수와 7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뤄냈다.¹⁹⁾ 그리고 GM(General Motors)은 멕시코 생산 공장을 철수하고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 공장 확대를 통해 미국 내 6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²⁰⁾

중국에 대규모 생산 라인을 두어 제조업 일자리를 내주고 있다고 트럼프에게 공개적 공격을 받은 애플(Apple) 또한 10억 달러 규모의 신사옥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며, 신사옥 설립에 따라 미국내 최대 20,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포했다.²¹⁾

17) 이수영 외, 앞의 연구보고서, 2018.

18) 다만,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광의의 리쇼어링 개념을 사용하기에, FDI 회수, 투자계획 변경 및 아웃소싱 취소 등의 수치가 자국복귀기업의 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19) BBC News, Ford Motors cancels \$1.6bn Mexico Plant, 3 January, 2017.

20) Fox Business, GM Expects To Move 600 Supplier Jobs From Mexico to Texas, 16 June, 2017.

[표 5] 미국의 리쇼어링 현황²²⁾

(단위: 개사, %)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합계 |
|------|-------|-------|-------|--------|--------|-------|-------|--------|--------|---------|
| 업체수 | 95 | 157 | 232 | 432 | 340 | 294 | 267 | 624 | 886 | 3,327 |
| (비중) | (2.9) | (4.7) | (7.0) | (13.0) | (10.2) | (8.8) | (8.0) | (18.8) | (26.6) | (100.0) |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은 리쇼어링 정책에 더욱 힘을 쏟고 나섰다. 미국 의회는 지난 3월 25일 코로나19로 인한 2조 달러(약 2500조 원) 경기부양 패키지에 합의하였으며, 여기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6000만 달러, 약 720억원)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에서 유턴하는 기업은 이전비용의 100%를 지원 하겠다” 고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1) Apple, Press Release, Apple expands in Austin, 20 November 2019.

22) Reshoring Initiative, “Reshoring Initiative 2018 Data Report: A Record 1389 Companies Announce the return of 145,000 Jobs”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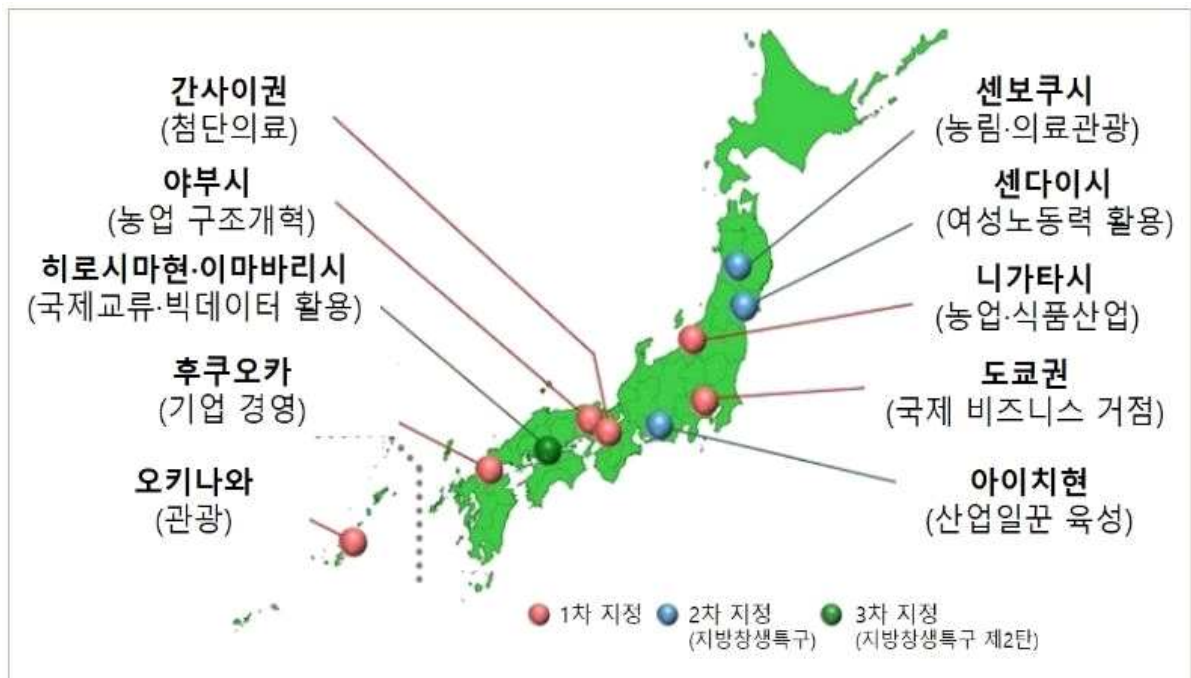
2. 일본 리쇼어링 정책 분석

2001년 집권한 고이즈미 총리는 ‘잃어버린 10년’의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강도 경제개혁을 시작하였다.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에 부합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였다.

이후 집권한 아베 총리 또한 동일한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2013년 ‘신성장전략(일본재흥전략)’을 발표하며, 엔고(円高)로 위축된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대지진 이후 피해복구를 위해 법인세 세율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2012년 30% 수준이던 법인세율을 2018년 23.4% 수준까지 낮추고, 2016년에는 수도권 공장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장재배치촉진법을 폐지하였다.

또한 아베 총리는 <그림 1>과 같이 일본 전역에 걸쳐 총 10개의 국가전략특별구역(국가전략특구)을 지정하여, 규제완화를 통해 해당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전략특구에서는 2018년 3월까지 총 86개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 중 법률로 반영되어 전국으로 조치된 사항은 24개에 달한다.²³⁾

<그림 1>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지정 현황²⁴⁾



23) 중소기업연구원,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제2권, 제1호, 2019. 1.

24) 중소기업연구원, 위의 연구보고서, 2019. 1.

그 결과, [표 6]과 같이 2006년 이후 2017년까지 총 7,021개의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일본으로 복귀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약 485개사로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이다.²⁵⁾

[표 6] 일본의 리쇼어링 현황²⁶⁾

(단위: 개사)

| 지역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
| 북미 | 127 | 94 | 81 | 140 | 113 | 110 | 63 | 73 | 70 | 103 | 76 | 94 | 1,144 |
| 아시아 | 231 | 235 | 303 | 371 | 339 | 317 | 314 | 365 | 406 | 466 | 435 | 472 | 4,254 |
| 중국 | 123 | 82 | 151 | 200 | 181 | 166 | 188 | 205 | 274 | 278 | 269 | 270 | 2,387 |
| 중국 외 | 108 | 153 | 152 | 171 | 158 | 151 | 126 | 160 | 132 | 188 | 166 | 202 | 1,867 |
| 유럽 | 57 | 85 | 57 | 90 | 106 | 103 | 95 | 76 | 101 | 93 | 79 | 80 | 1,022 |
| 총계 | 470 | 449 | 472 | 659 | 608 | 572 | 510 | 554 | 628 | 724 | 650 | 725 | 7,021 |

일본 역시 적극적인 기업환경 개선 및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 많은 일본의 기업들을 일본으로 복귀시켰으며 심지어 해외의 기업들을 일본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예를 들어, 도요타(Toyota)는 2016년 미국 인디애나주 후지중공업 공장에서 위탁생산하던 중형차 캠리 물량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공장으로 가져와, 연간 10만대 분량을 일본에서 추가 생산하기 시작했다. 또 캐나다에서 생산하던 고급차 렉서스 RX 물량 1만대도 2015년 가을부터 후쿠오카현 미야타 공장으로 돌렸다.

닛산(Nissan) 또한 북미 지역에서 연간 10만대씩 생산하던 SUV 로그의 생산 거점을 일본 규슈 공장으로 옮겼다. JVC켄우드(JVC Kenwood)도 오디오 생산라인을 말레이시아에서 야마가타현 쓰루오카시 공장으로 이전하는 등 수 많은 대기업들이 일본으로 복귀하고 있다.

25) 다만, 일본의 경우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보다 광의의 리쇼어링 개념을 사용하기에, FDI 회수, 투자계획 변경 및 아웃소싱 취소 등의 수치가 자국복귀기업의 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26)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Summary of the 48th Basic Survey on Overseas Business Activities (conducted in July 2018)”, 2018.

더 놀라운 것은 외국의 기업들도 일본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는 2017년 6월 중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일본 지바현 후나바시시에 50억엔(약 470억원)을 들여 대형 통신장비 공장과 통신장비 연구·개발을 위한 R&D 센터를 설립하였고, 중국의 자동차제조업체 창청자동차도 일본에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연구 거점을 세웠다. 미국의 반도체기업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또한 2017년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 20억 달러(약 2조 1,3000억원)을 투자했다.²⁷⁾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본은 긴급경제대책 예산액인 총 117조엔 가운데 약 2,200억엔(약 2조 3천억원)에 달하는 긴급재정자금을 자국복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과감한 보조금 지원책을 펴고 있다. 특히 이 보조금은 특정 국가에 대한 생산의존도가 높은 제품·소재,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제품·소재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자국복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보조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중국에 있는 생산거점을 본국으로 이전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2(50%), 중소기업의 경우 2/3(67%)를 보조하고 있다.

27) 조선일보 신문기사, “일본내 생산이 더 유리, 시세이도, 37년 만에 自國공장 건설”, 2018.01.08.

IV. 국내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제시

1. 규제완화 중심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쟁점1 연계]

현재 우리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표 7]과 같이 조세감면, 자금 지원, 입지지원,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인력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가 국내 다른 투자지원제도와 비교해도 이미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현행 국내지원제도 요약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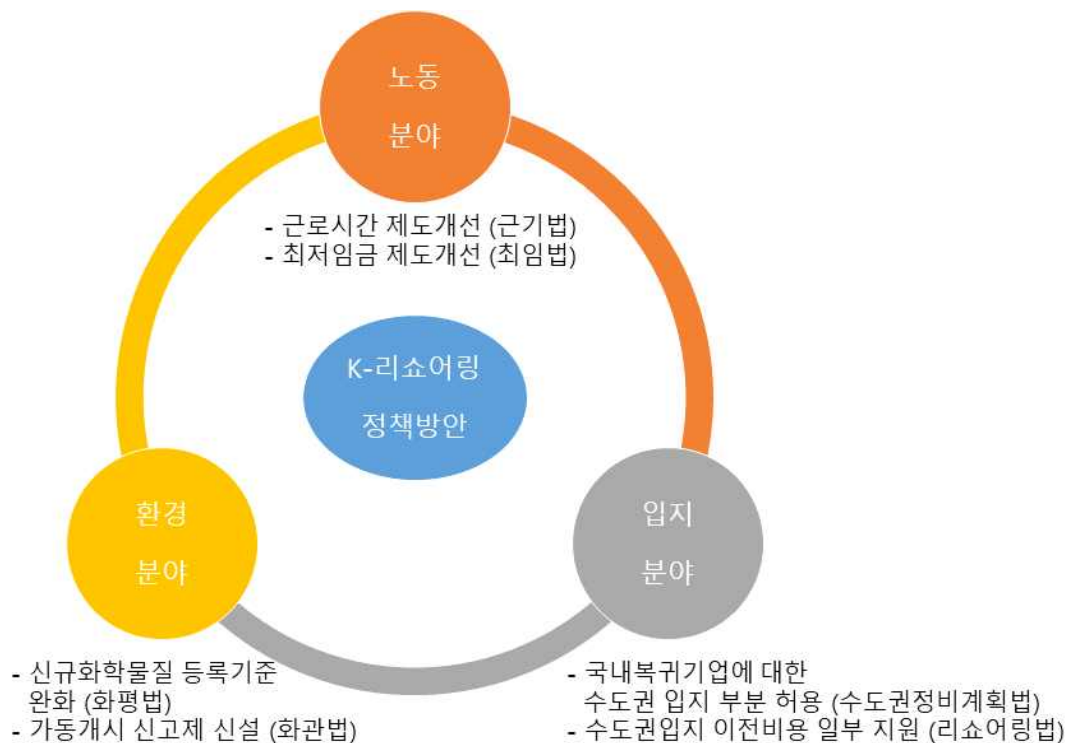
| 구분 | | 현행 국내 지원제도 요약 | |
|---------------|---------------|---|--|
| 조세 감면 | 법인세· 소득세 | 유턴 유형에 따라 최대 7년간 50~100% 감면 | |
| | | 1)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후 국내 복귀 시,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2)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후 국내 복귀 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 | 관세 | 유턴 유형에 따라 최대 7년간 50~100% 감면 | |
| | | 1)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후 국내 복귀 시, 관세 100% 감면 | 2)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후 국내 복귀 시, 관세 50% 감면 |
| 보조 금 지원 | 입지·설비 | 기업규모 및 지역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이내) | |
| |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9%~50% 이내 | |
|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6%~34% 이내 | |
| 인력 | 고용창출 장려금 | 국내사업장 신설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해 2년 기간 동안 1인당 年 720만원 지원 | |
| | 비자(E7) | 현지 생산관리 외국인력의 국내 재고용 희망시 ‘특정활동사증(E7)’ 허용 | |
| | 외국인고용 (E9) | 5억원 이상 신규 투자(토지제외)한 제조 기업에 과거 1년간 내국인고용인원 만큼 외국인근로자(E9) 추가 고용 허용 | |
| 기타 | | 국·공유 재산 사용 특례, 산업단지 우선 입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산업기술 R&D 지원,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구조조정 컨설팅 등 | |

28) 산업통상자원부·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자료집, 2020.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쇼어링법이 2013년 8월에 제정되어 2013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기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71개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리쇼어링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필자는 향후 리쇼어링의 정책방향이 인센티브 확대에서 규제완화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이미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리쇼어링 성과는 아직 미비하며, 인센티브 확대 보다 규제완화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①노동, ②환경, ③입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며, 분야별 규제완화 방안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 규제완화 중심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① 노동분야

국내 노동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표 8]과 같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 한다)과 「최저임금법」(이하 ‘최임법’ 이라 한다)의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연·월 단위 노사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제도 도입²⁹⁾,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³⁰⁾,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³¹⁾,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개선³²⁾, 특별연장근로제도 개선³³⁾ 등 근로시간 유연화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둘째,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³⁴⁾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지불여력(기업의 지불능력)을 추가³⁵⁾할 것을 제안한다.

[표 8] 노동분야 규제완화 방안

| 관련 법률 | 주요 내용 |
|-------|---|
| 근로기준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월 단위 노사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 단위 제한→ 연·월 단위로 변경 ◦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기간 확대 : 취업규칙 2주, 노사합의 3개월 → 6개월 - 근로계획 사전확정 : 근로일 또는 주별 수립 → 월별 수립 ◦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기간 1개월→3개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개별근로자 동의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인 미만 사업장, 1년 6개월간 한시 허용(21.7.1~22.12.31) → 50인 미만 사업장, 항구 적용 ◦ 특별연장근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상 인가사유(기업의 경영상 사유 등)를 법률에 규정 - 사후인가제 개선 : 사태급박 시 인가사후신청 사실에 대한 근로자동의시 요건 충족으로 간주 |
| 최저임금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필요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지불여력(기업의 지불능력)’ 추가 필요 |

29) 근기법 제53조.

30) 근기법 제51조.

31) 근기법 제52조.

32) 근기법 제53조 제3항.

33) 근기법 제53조 제4항.

34) 최임법 제4조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이미 규정하고 있음.

35) 최임법 제4조 제1항.

② 환경분야

국내 환경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이라 한다)」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이라 한다)」의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화평법에 의거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EU·일본의 경우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 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참고해 볼 때 **국내의 경우에도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100kg에서 1톤으로 완화³⁶⁾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둘째, 현행 화관법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에 따른 신고 후 검사결과(1~6개월 소요)를 획득하기 전까지는 생산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품목 및 용량 추가 시 공장가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先가동 後신고를 할 수 있는 ‘가동개시 신고제’ 신설³⁷⁾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③ 입지분야

수도권 입지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볼 때, 국내 입지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리쇼어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³⁸⁾, 성장관리권역³⁹⁾, 자연보전권역⁴⁰⁾으로 구분되어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로 인해 공장 신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우수인력 확보, 공급망 관리, 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의 부분적인 허용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둘째, 현행 정부·지자체는 수도권 외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해외진출 복귀기업에 대해서만 토지·공장의 매입비용·임대비용·설비투자금액 등을 지원⁴¹⁾하고 있는데, **해외진출 복귀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의 부분적인 허용시 이전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36) 화평법 제10조.

37) 화관법 제28조.

3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3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41) 리쇼어링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 중소기업 중심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쟁점2 연계]

현행 국내복귀기업 71개사(100%)의 현황을 분석해 볼 때, 중소기업이 62개사(87.3%), 중견기업이 8개사(11.3%), 대기업 1개사(1.4%)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체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또한 해외로 진출한 대기업의 경우 원자재 조달에 있어 글로벌 소싱을 확대하고 있어 해외로 진출한 대기업이 국내로 복귀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동반복귀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기술력이 있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국내복귀가 국내 산업 생태계와 국내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재에도 국내복귀 중소기업이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경우 [표 9]와 같이 토지·공장의 매입비용·임대비용·설비투자금액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⁴²⁾, 현행 중소기업의 리쇼어링에 대한 보조금 수준이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보인다.

[표 9] 현행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제도⁴³⁾

▶ 입지, 설비 보조금 합산 국비 지원액은 최대 100억 원 이내

| 지역 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입지: 토지매입가액, 설비: 설비투자금액 기준) | | | 총 보조금 중 국비보조 비율 |
|-----------------|--------|----------------------------------|-------|-------|-----------------|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수도권 인접지역 | 입지 | - | - | 9%이내 | 45% 이내 |
| | 설비 | 6%이내 | 8%이내 | 11%이내 | |
| 일반지역 | 입지 | - | 10%이내 | 30%이내 | 65% 이내 |
| | 설비 | 8%이내 | 11%이내 | 14%이내 | |
| 지원우대 지역 | 입지 | - | 20%이내 | 40%이내 | 75% 이내 |
| | 설비 | 11%이내 | 19%이내 | 24%이내 | |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등 | 입지 | - | 25%이내 | 50%이내 | 75% 이내 |
| | 설비 | 14%이내 | 24%이내 | 34%이내 | |

42) 리쇼어링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43) 산업통상자원부·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자료집, 2020. 3.

특히 일본의 경우 중국에 있는 생산거점을 본국에 이전 시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비용의 1/2 (50%)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비용의 2/3 (67%)를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것으로 판단한다.

생각건대, ①입지·설비 보조금 한도 상향(현행 합산 국비지원액 100억원 한도), ②중소기업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현행 일반지역 기준 입지 30% 이내, 설비 14% 이내), ③수도권 입주 시 입지·설비 보조금 신설(현행 수도권 입주 시 입지·설비 보조금 미지원) 등 중소기업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3. 리쇼어링 특구지정 방안 [쟁점3 연계]

코로나19로 국가별 생산과 교역에서의 정체가 글로벌 GVC를 통해 전 세계로 파급·전이되면서 글로벌 충격을 가져오고 있으며,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의 전략산업의 공급망 자립화, 생산기반의 리쇼어링, 디지털 전환 등을 급격히 촉진하고 있다.⁴⁴⁾

이에 우리나라도 공급망 관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이탈된 GVC의 수평적·수직적 재편을 위해 리쇼어링 관련 클러스터(Cluster) 조성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3장 제2절에서 선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도 신성장전략(일본재흥전략)의 방안으로써 국가전략특구와 부흥특구를 지정하여 특구 내 입주기업들에게 규제특례, R&D투자, 법인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본의 특구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일본의 특구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리쇼어링 관련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①클러스터 조성방식과 ②클러스터 조성입지로 구분해서 세부방안을 <그림 3>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클러스터 조성방식 | 클러스터 조성입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쇼어링 특구지정 필요 • 「(가칭)리쇼어링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경제자유구역 및 규제자유특구 모델 참조 • 특구내 규제 샌드박스 적용 • 특구내 최저임금 적용제외(또는 감액적용) • 해외시장 확대(진출)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지역 우선지정 필요 • 우리나라와 중국상무부간 한중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된 지역 • 지리적으로도 중국 및 동남아 지역과 인접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지역 경제 침체 • 특구 확대시 파주, 개성공단 등도 고려 |

<그림 3> 리쇼어링 특구지정 방안

44) 산업연구원, “코로나19가 제조업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I-KIET 산업경제이슈, 제82호, 2020. 04. 29.

① 클러스터 조성방식

클러스터 조성방식으로 다음의 두 가지 세부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하여 리쇼어링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식이 있다. 현행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현행 국내 리쇼어링 지원제도에서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산업단지 입주 시 우대를 해주고 있으며 동반복귀기업 입주 시 산업단지 지정요청도 가능하다.

둘째, 리쇼어링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여 리쇼어링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가칭)리쇼어링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리쇼어링 특구의 지정, 입주기업 지원, 특구의 관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리쇼어링 기업의 GVC 지원과 성과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리쇼어링 정책 추진시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복귀기업의 GVC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하는 방식보다 「(가칭)리쇼어링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리쇼어링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리쇼어링 특구는 경제자유구역⁴⁵⁾과 규제자유특구⁴⁶⁾의 모델을 참고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리쇼어링 특구에서는 규제 샌드박스⁴⁷⁾ 적용, 최저임금 적용제외(또는 감액적용), 해외시장 확대(진출) 지원 등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한다.

45)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정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가 소관부처이다. 2003년에는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 이어 2008년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 등이 추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았다. 이후 새만금·군산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5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46) 규제자유구역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하여 지정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가 소관부처이다. 2019년 7월 강원,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등 7곳이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47) 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② 클러스터 조성입지

현행 국내복귀기업 71개사(100%)의 현황을 분석해 볼 때, 해외진출지역이 중국이 64개사(90.1%)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5개사(7.0%), 방글라데시 1개사(1.4%), 필리핀 1개사(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결과를 바탕으로 중국·동남아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기업들의 국내복귀에 리쇼어링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면 중국·동남아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새만금 지역⁴⁸⁾을 리쇼어링 특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새만금 지역은 2015년 10월 우리나라와 중국 상무부 간에 체결한 ‘한중산업단지 공동조성에 관한 MOU’에서 한중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된 지역으로써⁴⁹⁾,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여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복귀 입지처로 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이후 새만금 지역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새만금 지역에 리쇼어링 특구를 조성한다면 지역 경제 회복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리쇼어링 특구의 조성입지로는 중국·동남아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새만금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리쇼어링 특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 파주, 개성공단 등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48) 새만금 지역은 향후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되기 위해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에 409km² 면적으로 조성되었다(출처: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49) 산업연구원, “한국산업협력단지 추진 현황”, 중국산업경제브리프, 2018. 06. 30.

4. 리쇼어링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쟁점4 연계]

제3장 제1절에서 선술한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과 제3장 제2절에서 선술한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은 자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현 시대가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스마트워크(Smart Work),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 등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리쇼어링 역시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화와 연계된 리쇼어링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기 때문에 리쇼어링 역시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연계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리쇼어링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 보다는 국내 산업 생태계 및 국내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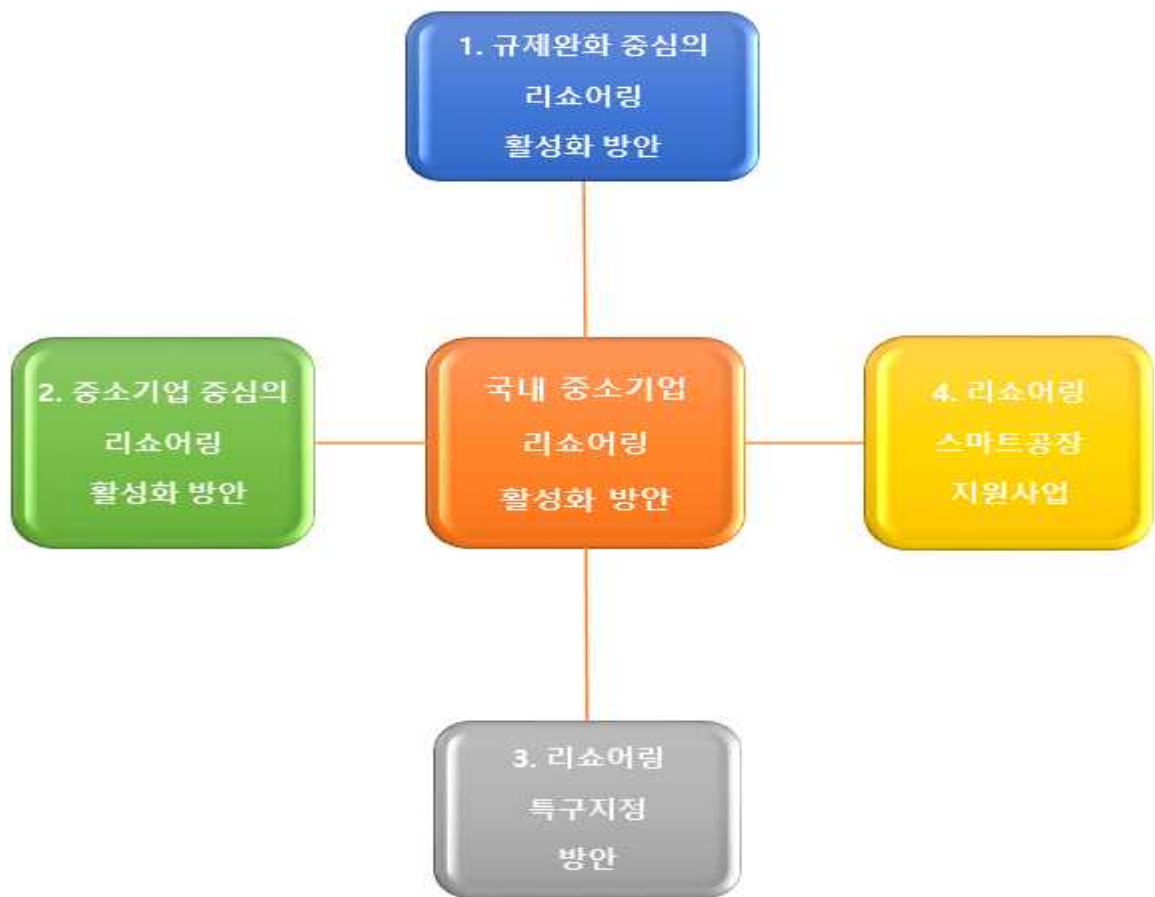
물론 현행 국내 리쇼어링 지원제도에 국내복귀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제도가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에 국한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국내복귀 중소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참여시 참여기업 부담금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생각전대, 정부와 대기업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가칭)리쇼어링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리쇼어링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국내복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리쇼어링 특구에 입주하는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을 제안한다.

V.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으로 <그림 4>과 같이 4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림 4> 국내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요약

첫째, 리쇼어링의 정책방향이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국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 환경, 입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제안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리쇼어링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입지·설비 보조금 한도 상향, 중소기업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수도권 입주 시 입지·설비 보조금 신설 등 중소기업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셋째, 리쇼어링 정책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히 관리하고 리쇼어링 기업의 GVC(Global Value Chain)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하는 방식보다 리쇼어링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리쇼어링 특구의 조성입지로는 중국·동남아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새만금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넷째, 정부와 대기업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가칭)리쇼어링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다만, 리쇼어링 정책의 성과 확대와 국내 기업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수출비중, 인력고용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약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책보고서, 2020. 6.
- 김상신, “리쇼어링 2.0 필요 :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제18-24호, 중소기업연구원, 2018. 9.
- 남수중·방만기, “리쇼어링의 주요 국가 사례와 결정요인 분석 - 4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혁신의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19.
- 맹수석,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전략 정책토론회 자료집(어기구 의원실 주관), 2020. 5.
- 산업연구원, “코로나19가 제조업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I-KIET 산업경제이슈, 제82호, 2020. 04. 29.
- 산업연구원, “한국산업협력단지 추진 현황”, 중국산업경제브리프, 2018. 06. 30.
- 산업통상자원부·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자료집, 2020. 3.
- 이상욱·권철우·최창훈,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요인분석”, 사회과학연구, 제55권 제1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 이수영 외,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연구보고서, 18-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이재운 외, “한국기업의 오프쇼어링 성과분석 및 시사점 -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7-853, 산업연구원, 2017.
- 정준호, “미국 제조업 부활 정책 및 리쇼어링 현황”, 월간노동리뷰, 2017년 6월호, 2017.
- 중소기업연구원,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제2권, 제1호, 2019. 1.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리쇼어링 관련 의견 조사 결과보고서”, 조사보고서, 2019. 06.
- 질병관리본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비용 추계 및 신종 감염병 대응 사회투자의 영향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 2020.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經濟産業省), “Summary of the 48th Basic Survey on Overseas Business Activities (conducted in July 2018)”, 2018.
- Reshoring Initiative, “Reshoring Initiative 2018 Data Report: A Record 1389 Companies Announce the return of 145,000 Jobs”, 2019.

[별첨]

1.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현황

- 국내복귀기업지원법 시행(2014) 이후 유턴기업은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 1개사를 포함한 총 71개사 (연평균 11개)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합계 |
|------|---------|--------|---------|--------|---------|---------|--------|--------|
| 업체수 | 20 | 3 | 12 | 4 | 9 | 16 | 7 | 71 |
| (비중) | (28.2%) | (4.2%) | (16.9%) | (5.6%) | (12.7%) | (22.5%) | (9.9%) | (100%) |

- 해외사업장: 중국으로부터의 유턴이 절대 다수이나, 최근 지역 다변화 추세

| 국가 | 중국 | 베트남 | 방글라데시 | 필리핀 | 합계 |
|------|---------|--------|--------|--------|--------|
| 업체수 | 64 | 5 | 1 | 1 | 71 |
| (비중) | (90.1%) | (7.0%) | (1.4%) | (1.4%) | (100%) |

- 기업규모: 중소기업의 유턴 비중이 높으나, 중견기업 증가 추세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합계 |
|------|---------|---------|--------|--------|
| 업체수 | 62 | 8 | 1 | 71 |
| (비중) | (87.3%) | (11.3%) | (1.4%)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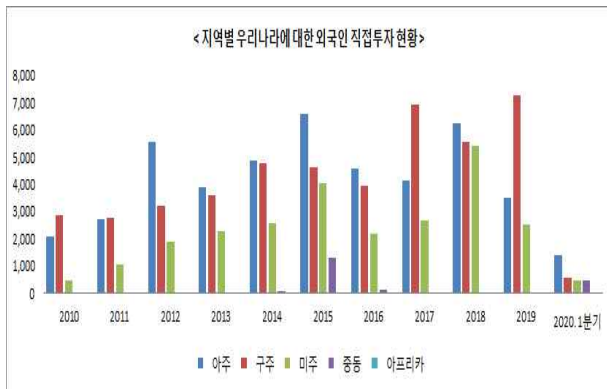
- 품목: 주얼리,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신발, 기계, 금속 순

| 품목 | 주얼리 | 전기전자 | 자동차부품 | 신발 | 기계 | 금속 | 화학 | 섬유 | 기타 | 합계 |
|------|---------|---------|---------|--------|--------|--------|--------|--------|---------|--------|
| 업체수 | 13 | 12 | 10 | 7 | 6 | 6 | 5 | 4 | 8 | 71 |
| (비중) | (18.3%) | (16.9%) | (14.1%) | (9.9%) | (8.5%) | (8.5%) | (7.0%) | (5.6%) | (11.3%) | (100%) |

2.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 (총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 및 해외설립법인수는 지속적인 증가세
 - 제조업은 전체 투자액의 29.7%, 전체 해외신규법인설립수의 29.6%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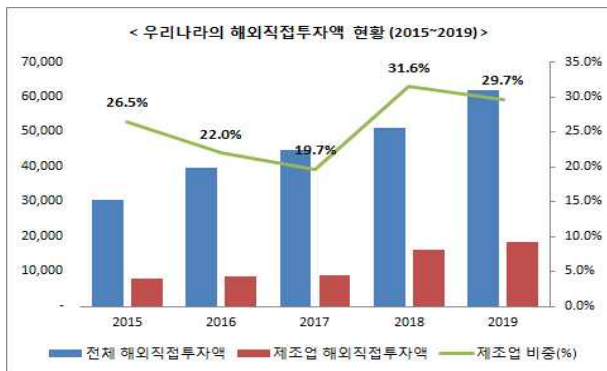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2010~2020. 1분기) 〉



(단위: 백만달러)

| | 전체 산업 | 제조업 | 제조업 비중 |
|------|--------|--------|--------|
| 2015 | 30,374 | 8,052 | 26.5% |
| 2016 | 39,791 | 8,744 | 22.0% |
| 2017 | 44,971 | 8,858 | 19.7% |
| 2018 | 51,099 | 16,122 | 31.6% |
| 2019 | 61,847 | 18,347 | 29.7% |

〈 우리나라 해외신규법인설립 현황 (2015~2019) 〉



(단위: 개)

| | 전체 산업 | 제조업 | 제조업 비중 |
|------|-------|-------|--------|
| 2015 | 3,217 | 1,220 | 37.9% |
| 2016 | 3,345 | 1,145 | 34.2% |
| 2017 | 3,436 | 1,104 | 32.1% |
| 2018 | 3,548 | 1,146 | 32.3% |
| 2019 | 3,953 | 1,172 | 29.6% |

- (국가별) 우리나라의 신규법인 설립 상위 5개국은 미국 제외 모두 아시아에 위치
 - 전체 해외신규법인 설립 중 중국의 비중은 20.8%(2016)에서 11.8%(2019)로 9%p 하락

〈 우리나라의 해외신규법인 설립 상위 5개국 현황 (2015~2019) 〉

(단위: 개, %)

| 2016 | | | | 2017 | | | | 2018 | | | | 2019 | | | |
|------|-----|-------|-------|------|-----|-------|-------|------|------|-------|-------|------|------|-------|-------|
| 순위 | 국가 | 설립 | 비중 | 순위 | 국가 | 설립 | 비중 | 순위 | 국가 | 설립 | 비중 | 순위 | 국가 | 설립 | 비중 |
| 1 | 중국 | 696 | 20.8 | 1 | 베트남 | 698 | 20.3 | 1 | 베트남 | 814 | 22.9 | 1 | 베트남 | 914 | 23.1 |
| 2 | 베트남 | 669 | 20.0 | 2 | 미국 | 542 | 15.8 | 2 | 미국 | 548 | 15.4 | 2 | 미국 | 652 | 16.5 |
| 3 | 미국 | 519 | 15.5 | 3 | 중국 | 536 | 15.6 | 3 | 중국 | 488 | 13.8 | 3 | 중국 | 466 | 11.8 |
| 4 | 일본 | 215 | 6.4 | 4 | 일본 | 264 | 7.7 | 4 | 일본 | 243 | 6.8 | 4 | 일본 | 244 | 6.2 |
| 5 | 홍콩 | 156 | 4.7 | 5 | 홍콩 | 161 | 4.7 | 5 | 싱가포르 | 148 | 4.2 | 5 | 싱가포르 | 152 | 3.8 |
| | 전체 | 3,345 | 100.0 | | 전체 | 3,436 | 100.0 | | 전체 | 3,548 | 100.0 | | 전체 | 3,953 | 100.0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3.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총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부터 하락세
 - 2020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9.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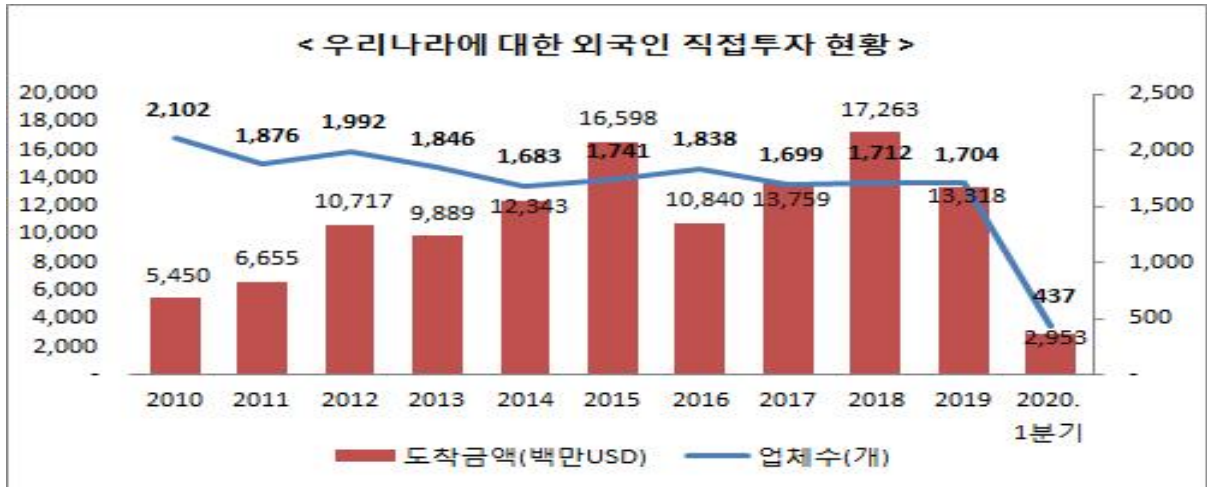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2010~2020. 1분기) >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업체수)

| 年 | 개수 | 증가율 | 年 | 개수 | 증가율 |
|-----|-------|--------|------|-------|-------|
| '10 | 2,102 | - | '16 | 1,838 | 5.6% |
| '11 | 1,876 | -10.8% | '17 | 1,699 | -7.6% |
| '12 | 1,992 | 6.2% | '18 | 1,712 | 0.8% |
| '13 | 1,846 | -7.3% | '19 | 1,704 | -0.5% |
| '14 | 1,683 | -8.8% | '20. | 437 | -2.2 |
| '15 | 1,742 | 3.4% | 1분기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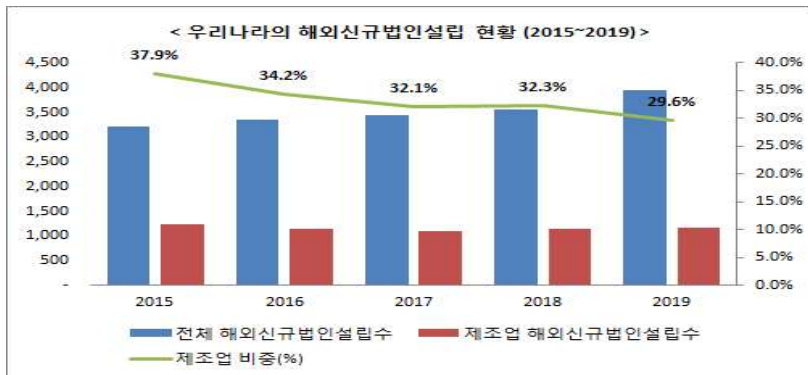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달러)

| 年 | 금액 | 증가율 | 年 | 금액 | 증가율 |
|-----|--------|-------|------|--------|--------|
| '10 | 5,450 | - | '16 | 10,840 | -34.7% |
| '11 | 6,655 | 22.1% | '17 | 13,759 | 26.9% |
| '12 | 10,717 | 61.1% | '18 | 17,263 | 25.5% |
| '13 | 9,889 | -7.7% | '19 | 13,318 | -22.9% |
| '14 | 12,343 | 24.8% | '20. | 2,953 | -2.0% |
| '15 | 16,598 | 34.5% | 1분기 | | |



- (산업별)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20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68.8%가 서비스업, 30.5%가 제조업으로 함

< 산업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2010~2020. 1분기) >



<2020. 1분기 기준>

| | 상위 세부 산업 | 비중 |
|------|-----------|-------|
| 제조업 | 항공 | 19.8% |
| | 전기·전자 | 8.9% |
| | 운송용 기계 | 0.4% |
| 서비스업 | 금융보험 | 39.5% |
| | 부동산 | 9.7% |
| | 연구개발·과학기술 | 8.1%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 (지역별) 도착금액 기준, 중동 제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투자
 - 2020년 1분기, 아시아(47.9%), 유럽(19.5%), 미주(16.4%), 중동(16.2%) 순

< 지역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2016~2020. 1분기) >

(단위: 백만달러, %)

| (2020 기준) | | 2016 | | 2017 | | 2018 | | 2019 | | 2020. 1분기 | |
|-----------|---------|--------|-------|--------|-------|--------|-------|--------|-------|-----------|-------|
| 순위 | 지역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1 | 아주(아시아) | 4,564 | 42.1 | 4,136 | 30.1 | 6,240 | 36.1 | 3,496 | 26.2 | 1,414 | 47.9 |
| 2 | 구주(유럽) | 3,940 | 36.3 | 6,918 | 50.3 | 5,585 | 32.4 | 7,293 | 54.8 | 576 | 19.5 |
| 3 | 미주 | 2,179 | 20.1 | 2,675 | 19.4 | 5,410 | 31.3 | 2,508 | 18.8 | 484 | 16.4 |
| 4 | 중동 | 151 | 1.4 | 20 | 0.1 | 22 | 0.1 | 16 | 0.1 | 478 | 16.2 |
| 5 | 아프리카 | 7 | 0.1 | 12 | 0.1 | 6 | 0.0 | 6 | 0.0 | 1 | 0.0 |
| 전체 | | 10,840 | 100.0 | 13,759 | 100.0 | 17,263 | 100.0 | 13,318 | 100.0 | 2,953 | 10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 (국가별) 상위 10개국의 직접투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의 약 96% 차지
 - 2020년 1분기, 싱가포르(37.0%), 쿠웨이트(15.7%), 네덜란드(10.7%), 홍콩(6.8%), 미국(6.4%) 순

<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현황 (2016~2020. 1분기) >

(단위: 백만달러, %)

| 순위 | 2016 | | | 2017 | | | 2018 | | | 2019 | | | 2020. 1분기 | | |
|----|-------|--------|-------|------|--------|-------|-------|--------|-------|-------|--------|-------|-----------|-------|-------|
| | 국가 | 금액 | 비중 | 국가 | 금액 | 비중 | 국가 | 금액 | 비중 | 국가 | 금액 | 비중 | 국가 | 금액 | 비중 |
| 1 | 싱가포르 | 2,111 | 19.5 | 몰타 | 1,963 | 14.3 | 미국 | 3,804 | 22.0 | 네덜란드 | 2,321 | 17.4 | 싱가포르 | 1,093 | 37.0 |
| 2 | 몰타 | 1,540 | 14.2 | 영국 | 1,939 | 14.1 | 몰타 | 2,230 | 12.9 | 영국 | 1,996 | 15.0 | 쿠웨이트 | 465 | 15.7 |
| 3 | 미국 | 1,511 | 13.9 | 네덜란드 | 1,465 | 10.6 | 호주 | 2,004 | 11.6 | 몰타 | 1,522 | 11.4 | 네덜란드 | 317 | 10.7 |
| 4 | 네덜란드 | 1,083 | 10.0 | 홍콩 | 1,282 | 9.3 | 스페인 | 1,389 | 8.0 | 미국 | 1,374 | 10.3 | 홍콩 | 199 | 6.8 |
| 5 | 홍콩 | 938 | 8.7 | 일본 | 1,277 | 9.3 | 홍콩 | 1,083 | 6.3 | 일본 | 1,190 | 8.9 | 미국 | 189 | 6.4 |
| 6 | 일본 | 813 | 7.5 | 미국 | 1,230 | 8.9 | 싱가포르 | 1,036 | 6.2 | 싱가포르 | 1,125 | 8.4 | 캐나다 | 170 | 5.8 |
| 7 | 중국 | 479 | 4.4 | 싱가포르 | 1,123 | 8.2 | 일본 | 1,035 | 6.0 | 홍콩 | 799 | 6.0 | 영국 | 156 | 5.3 |
| 8 | 케이만군도 | 339 | 3.1 | 버뮤다 | 748 | 5.4 | 중국 | 784 | 4.5 | 케이만군도 | 689 | 5.2 | 케이만군도 | 107 | 3.6 |
| 9 | 아일랜드 | 293 | 2.7 | 독일 | 411 | 3.0 | 프랑스 | 639 | 3.7 | 독일 | 452 | 3.4 | 일본 | 87 | 2.9 |
| 10 | 바레인 | 230 | 2.1 | 캐나다 | 284 | 2.1 | 바베이도스 | 546 | 3.2 | 헝가리 | 312 | 2.3 | 이탈리아 | 43 | 1.5 |
| 소계 | | 9,337 | 86.1 | | 11,721 | 85.2 | | 14,578 | 84.4 | | 11,781 | 88.5 | | 2,827 | 95.7 |
| 전체 | | 10,840 | 100.0 | | 13,759 | 100.0 | | 17,263 | 100.0 | | 13,318 | 100.0 | | 2,953 | 10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